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03 발의연월일: 2025. 5. 26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이인선

김정재 · 이종배 · 박충권

김위상 · 최수진 · 안상훈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함)을 설치·운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, 기금을 경비, 운영비,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.

또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인 전입장려금을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,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, 양육수당 등 국가 정책 수준의 사업 역시 자체 예산으로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소멸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임.

이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,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, 지 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 24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조성 등을"을 각각 "조성과 경상적 경비 지출 등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)	제24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)
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	①
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	
1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	1
시설 <u>조성 등을</u> 위한 시·도	조성과 경상적 경비 지
에 대한 재정지원	출 등을
2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	2
시설 <u>조성 등을</u> 위한 시·군	조성과 경상적 경비 지
•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	출 등을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